
『 23년 해외곡물망 확보 용자지원 사업』 지침

2023. 4.



농림축산식품부
식량정책과

해외곡물망 확보 용자 지원

(세부)농업자금이차보전-(내역)해외 곡물망 확보 용자지원

I 사업 개요

□ 목 적

- 쌀을 제외한 밀, 콩 등 주요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, 전쟁 등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
- 위기시 안정적으로 해외 곡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현지 유통망 확보 필요

□ 사업내용

- 식량 위기에 대응한 국제곡물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 업계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한 투자 비용 등 지원

□ 근거법령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3조(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), 제28조(농업 부분의 해외투자 지원),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5조(용자)

□ 지원자격 및 요건

- 해외에 소재한 곡물엘리베이터 등 유통시설 확보를 희망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자(예정자 포함)
 - 비상시 확보한 유통시설을 통해 곡물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(근거: 해외농업산림법 제33조)

□ 지원내용 및 예산

- '23년 지원규모 : 500억원 / 용자*(이차보전)
 - * 연리 1.5% 또는 변동금리 /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
- 지원내용 : 국제곡물 해외유통망 확보 투자 비용 및 소요자금
 - *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곡물엘리베이터, 가공공장 등 유통시설 지분인수 비용 등

□ 대상자 선정

- 공모·선정기준에 따라 서류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여 60점 이상 취득 사업자 중 최고득점 업체
- 선정기준 항목 :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여건, 역량 및 운영계획 등 평가

□ 담당 기관 및 연락처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연락처
농림축산식품부	식량정책과	과 장 변상문 사무관 노승호	044-201-1811 044-201-1829
농협은행	농업금융부	팀 장 홍희령 과 장 신승곤	02-2080-7590 02-2080-7586

1. 사업대상자

- 국제곡물 해외유통망 확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업체로서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7조(사업계획의 신고)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개발을 신고한 자(예정자 포함)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1) 지원자격

-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자 중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와 안정적인 국내공급을 위해 해외에 소재한 곡물엘리베이터 등 유통시설 확보가 확정되었거나 확보 예정인 자로써, 시설을 통해 확보한 자원의 국내 반입계획이 있는 자
 - * 단, 신청일 기준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대상이 있는 경우 향후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를 전제로 신청 가능
 - ** 곡물: 식량작물 중 밀, 콩, 옥수수 등 자급률이 낮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품목
- 기업내 투자 결정, 해당국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
- 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(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)에 의하여 비상 시, 보유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
 - * 단, 식량 순수입 빈곤국(식량 원조 수혜 등),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·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지원 제외

2) 선정 우대

- 밀·콩·옥수수 등 해외 곡물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
-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
-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

3. 지원규모 및 기준

-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: 500억원 / 국고 융자지원
 - 지원내용: 곡물엘리베이터 등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융자금
 - 융자금리: 연리 1.5% 또는 변동금리
 - 상환기간: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
 - * 동 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융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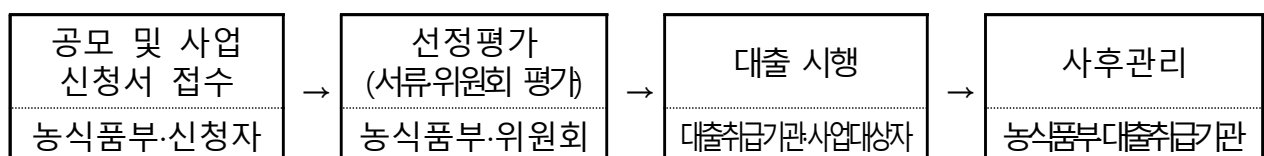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1년 /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 확보 완료
- 지급기준 : 사업계획 또는 진도에 따라 융자 대상에게 일시 또는 분할 지급
(신청자는 신청시 자금소요 계획 사전 제출)
-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의 기준에 따름
- 지원 규모 : 1개 기업 (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음)

5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국제곡물 해외유통망 확보 투자 비용 및 소요 자금
 - (1순위) 해외 곡물엘리베이터 확보(신설, 인수, 지분투자 등)에 필요한 자금
 - (2순위) 기타 해외 곡물 저장·가공·유통 시설 확보(신설, 인수, 지분투자 등)에 필요한 자금
- * 단, 해외 유통시설 확보를 전제로 하며 인건비는 대상에서 제외

6. 사업추진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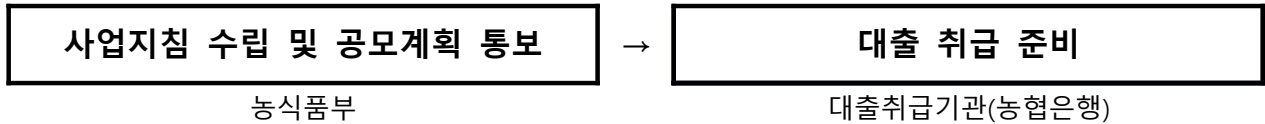
- (사업공모 및 접수) 신청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*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
 -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선정 평가에 활용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작성하고, 증빙서류 제출
- * 사업계획서 필수 기재내용: 투자국, 투자대상 자산, 예상 소요금액, 투자일정, 현재까지 추진상황, 현지 법인 설립현황(해당시), 취급 예정물량, 판매계획, 국내반입 계획 등
- ** 1차 공모 시 사업 신청이 미달 될 경우 1개월 단위로 공모 기간 자동 연장하고, 신청자 중 심사 결과 적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미선정 후 재공고
- (서류검토 및 평가 등 선정)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
- (선정결과 통보 및 대출시행) 사업 선정 추천서를 발급하고 사업대상자가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



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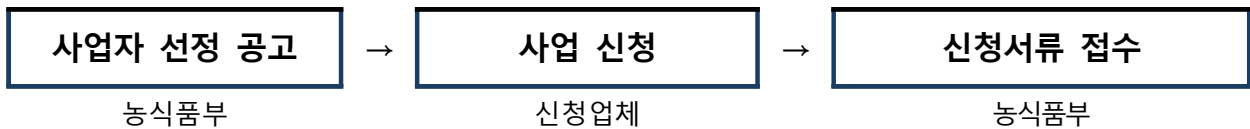
세부 사업추진체계

1. 사업지침 수립



-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공모(심사)계획을 수립하고 대출취급기관에 통지
 - 지원조건, 자금용도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지침과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일정,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(심사) 계획 수립
-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시행지침 및 공모계획에 따라 대출 사전준비
 - 자체 대출 취급 계획, 대출 방법, 사후관리 방법 등 사전 준비

2. 사업 공모 및 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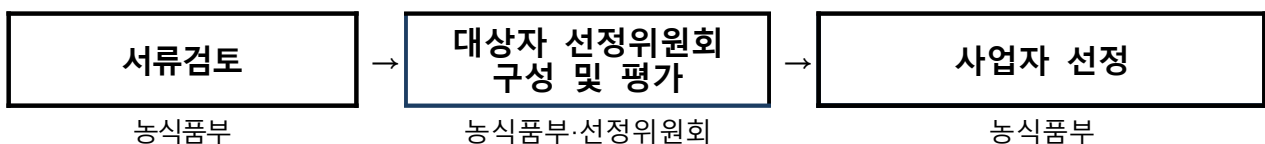


- 농식품부는 지침 및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
-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간업체는 사업필요성, 사업추진 세부계획, 융자금 대출계획, 판매계획 등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농식품부에 제출

<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>

- ▶ 사업신청시(농식품부에 제출):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 증빙서류
- ▶ 대출실행시(농협에 제출): ① 사업대상자 선정공문 ② 사업실적 확인서 ③ 기타 대출취급에 필요한 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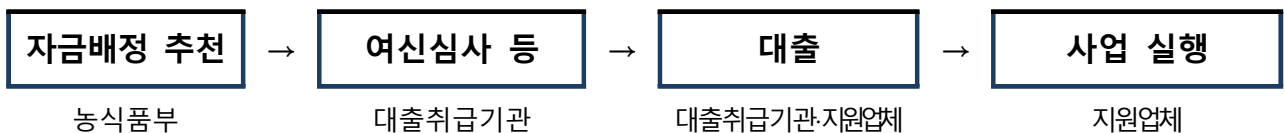
3. 사업자 선정단계

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및 증빙서류 기반 적격사항 검토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적정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
 - 선정위원회는 산업·농업계, 학계·연구기관, 정부 등의 전문가 5인 내외 정도로 구성하고, 기준점수(60점) 이상인 신청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 - 첨부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필요성, 사업의지 및 계획 적정성, 전문성, 역량 등 사업추진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
 - 평균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·최고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하고,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

3. 대출 및 사업시행단계



농림축산식품부

-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업체 대출예정금액 확정 내역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
-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

대출취급기관

- 대출취급 기관은 농식품부가 발급한 사업대상자 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 신청서에 의거 여신심사 후 대출 실행

사업대상자

-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선정 추천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자금 대출 신청
- 해외곡물망 확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
- 사업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

* 국제곡물 해외유통망확보지원금은 해외유통망 확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

-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12월까지 대출을 실시해야하며, 그 밖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「농림축산식품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」 규정에 따름

4. 이행점검단계

《 사후관리 》

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의 이용상황 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필요 시 점검 실시
-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를 점검하고,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 실태 등 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, 제도개선·민원사항 등을 확인
-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자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대출취급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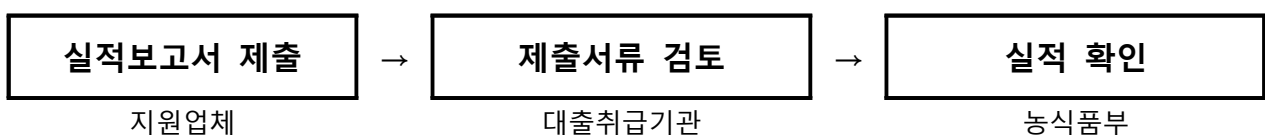
-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, 여신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함

《 제재 》

대출취급기관

-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 조치
-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12월까지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며, 당해연도 사업 포기 및 자금 미대출 업체는 차년도 사업 신청 시 후순위 배정
-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” 제70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음

5.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



-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실적확인서(별지 제8호 서식, 증빙서류 포함)를 작성하여 대출 취급기관에 제출

6. 성과측정단계

-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사용 실태 및 실적 등 점검

IV

평가 및 환류

1. 사업 평가

- 평가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
- 평가대상 : 국제곡물 해외유통망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대상자
- 평가절차 : 지원실적 현황분석, 현장점검,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대상자는 이에 협조
- 평가시기 : 12월 *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
- 평가내용 : 사업진행 상황, 사업결과,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

2. 환류

- 사업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자 선정, 사업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을 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에 보완

별지 1

사업 신청서

해외 곡물망 확보 용자지원 사업 신청서				
신청자	1. 상 호	(전화번호 :)		
	2. 대 표 자			
	3. 주 소			
	4.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부	☐ 여 ☐ 부	5. 신고수리일(신청 예정일)	
	5. 사업책임자	성명: 직위: 전화:		
	6. 정책사업 참여실적 * 최근 3년간	☐ 농식품부, 한국농어촌 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용자 등 (사업명: 00년, 00 사업, 용자 00억원)		
사업개요	7. 확보 시설 유형	곡물엘리베이터 / 00 공장 / 00 등		
	8. 대상품목			
	9. 사업장 소재지	국가명 / 지역 등	11. 부지면적	m ²
	10. 현지사업자			
	11. 투자방법	☐ 단독 ☐ 합작	14. 참여지분비율	%
	12. 해외 합작투자자			
자금소요	13. 전기간 총 사업비	(기간) / (사업비) 억원		
	14. 신청기간 총 사업비	(기간) / (사업비) 억원		
	15. 신청인 부담액			
	16. 용자신청금액			
	17. 대상 사업 관련 정부 지원 여부	본 신청인(기업)은 용자 신청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, 용자금 등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 ☐ 여 ☐ 부		
	18. 가산점	☐ 해외 곡물분야 사업 추진 기업 ☐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에 도입한 실적 있는 기업 ☐ ODA 등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실적(00사업)		
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해외 곡물망 확보 지원을 용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: 대표자 : (인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				
첨부서류	1.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			
	2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포함) 및 인감증명서(발급후 3개월 이내 분)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	
	3. 사업계획서			
	4. 주주명부(법인인 경우)			
	5. 현지사업자 관련증빙(정관, 합작계약서, 사업자등록증빙, 투자승인서 등)			
	6. 사업추진 관련증빙(사업인가서, 구매계약, MOU 등)			
	7. 용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			
	8.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(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)			
	9. 정관 사본			
	※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

〈 작성 참고 〉

〈신청서〉

4. **해외농업자원개발신고여부** :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개발 신고 여부
6. **정책사업 기참여실적** :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융자지원 사업 등
9. **사업장소재지** : 해외 사업장 소재지(농지, 가공시설 소재지 등)
10. **현지사업자** : 현지법인명칭(영문표기)
13. **전기간 총 사업비** : 해당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
14. **신청기간 총 사업비** : 융자금 집행기간의 총 사업비
15. **신청인 부담액** : 신청기간 총사업비 중 융자금을 제외한 신청인 자부담금
17. **대상사업 관련 정부지원여부** : 해당 프로젝트 관련 정부기관에 자금 지원받은 과거 이력 여부표시
18. **가산점**: 해외 곡물 분야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

〈첨부서류〉

1. **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(사본)**
 - * 농식품부에서 발송한 공문 형태 / 추후 신고 예정일 경우 첨부 생략
2. **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**
 - * 반드시 원본 제출하며 발급 후 3개월 이내 분만 인정
3. **사업계획서** : 첨부된 「별지 2」에 따름
5. **현지사업자 관련증빙**
 - * 현지사업자의 설립여부, 현지법인의 대표, 설립일, 자본금, 지분관계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(
 - * 합작계약서(합작법인일 경우) : 합작사/합작사업 관련내용, 기간, 투자총액과 지분관계, 소유권관계, 이익과 손실분배, 합작사 운영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, 자금운용·세무·금융·회계감사 내용, 계약의 수정·변경·해제 관련 내용, 법률관계 등)
6. **사업추진 관련증빙** *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, 승인서 등
8. **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**
 - * 수입신고필증(관세청)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제출

〈기타〉

- 금액은 원화(백만원 단위)를 기준으로 작성하며, 타국통화 병기 가능(적용환율 기재)
-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(주주명부, 현지사업자 관련증빙, 사업추진 관련증빙 등)는 반드시 번역 제출

해외 곡물망 확보 용자 지원 사업계획서

1. 신청 사업자 개요

1.1 국내사업자 개요

- 상 호 :
- 대 표 자 :
- 설립년월일 :
- 직 원 수 :
- 주요사업 소개

-

-

1.2 해외사업 추진경험

- 해외 곡물 분야 사업 추진실적,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개발한 실적,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

☐ 프로젝트명 :

- 대상국가 :
- 사업기간 :
- 사업내용

-

-

- 주요성과

-

-

2. 사업준비

2.1 추진 배경 및 목적

- 사업추진 배경
 - 사업 추진배경과 목적, 특성과 역할, 그리고 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 기술
 - 해당 국가에 투자 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

-

2.2 사업 추진여건 분석

기후, 교통, 전력, 임금, 유통, 시장상황, 세제 등 진출을 위해 사전 검토된 현지투자 여건을 기재

-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현황 및 이유

-

-

- 사업장소

- 지형도(또는 위성사진)에 확보할 유통 자원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 첨부

-

- 현지 현황 및 특성

- 확보 하려는 지역의 농산물 유통관련 일반 현황

- 현지 규제사항 검토

-

-

- 그 밖의 현황 및 특이사항

-

-

2.3 현지사업자

☐ 현지법인 ※ 현지법인 정관,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첨부

- 상 호 :

- 대 표 자 :

- 사무소 소재지 :

- 직 원 수 :

- 특이사항

- 운영권자, 이사회 주주총회 구성 및 의결 기준 등

-

☐ 현지 파트너 ※ 합작투자자 등 현지 사업파트너 있을 경우 현황 기재

- 상 호 :

- 대 표 자 :
- 사무소 소재지 :
- 직 원 수 :
- 주요사업 소개
-
-

2.4 추진인력 (※ 현지점 기준 융자신청사업 관련자)

구분	소속	직위	이름	담당업무 및 주요 경력
합 계			00명	
국내 법인	〇〇	상무	홍길동	국내사업 총괄 농업경제학 박사('95) 캄보디아 〇〇사업 총괄('00)
	〇〇	과장	고길동	
현지 법인				
현지 파트너				

3. 사업추진 계획

3.1 사업개요

☐ 사업 추진계획 개요

- 사업추진계획 개요
-
-

☐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

- 사업추진 경위 (※ 현지조사, 법인설립, 허가, 생산개시, 지분이전 등을 기재한다.)
- 2000. 00. 00. :
- 2000. 00. 00. :
- 동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노력 및 일자별 추진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

- 사업계획 대비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하여 기재 (사전조사, 투자계획 확정, MOU, 해당국 승인 절차 등)

-

-

□ 기 투자내역

(단위 : 백만원, 환율 1\$=0000원 적용)

투자시기	세부내역	금액	비고
계			
'21.2월			
'21.6월~'22.1월			

□ 확보계획

구분	확보 시설명	재원	수량	주요용도
기확보				
확보 예정				

- 투자시설 현황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기재

-

-

□ 정부 지원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년도	지원구분	지원사업명	지원기관	지원액
20xx	융자	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	한국농어촌공사	
	융자	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	산림조합중앙회	
	보조			

3.2 판매계획

□ 주요 판로

- 주 판매처, 향후 수요처 전망 등

-

-

□ 유통계획 (※ 향후 5년간, 구체적 판로 있을 경우 기재)

구분		20xx	20xx	20xx	20xx	20xx
품목1	현지판매 계					
	- 수요처1					
	- 수요처2					
	국내반입					
	- 수요처1					
	- 수요처2					
품목2	현지판매 계					
	- 수요처1					
	- 수요처2					
	국내반입					
	- 수요처1					
	- 수요처2					

□ 국내 반입 세부계획 (국내반입 예정 품목인 경우)

- 국내 수급여건(수입량, 국내생산량 등), 국내도입 관세, 가격변동, 실수요처 등

-

-

- 현지 사업장부터 국내 수요처까지 반입 경로, 방법, 소요기간, 비용, 물류스케줄 등

-

-

□ 국내반입 실적 (최근 3년간)

품목	연도별 반입실적(톤)				비고
	20xx년	20xx년	20xx년	20xx년	
품목1					
품목2					

※ 반입증빙 첨부

3.3 수익성

□ 손익추정

(단위 : 백만원, 환율 1\$=0000원 적용)

구분	20xx	20xx	20xx	20xx	20xx	20xx	비고
매출액							
매출원가(재료비, 노무비, 임차료, 감가상각비, 기타생산경비 등)							
매출총이익							
판매비외 관리비							
영업이익							
영업외손익							
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							
법인세비용							
당기순이익							

□ 손익추정 세부내역

○ 매출액

- 매출액 산출 세부내역 및 관련근거

-

○ 매출원가

- 매출원가 산출 세부내역 및 관련근거

-

○ 판매관리비

-

4. 투자계획

4.1 연차별 투자계획

□ 자금조달 계획 (※ 현지법인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20xx	20xx	20xx	20xx	20xx	20xx
계							
자본금	소계						
	국내사 출자						
	현지파트너 출자						
차입금	소계						
	정부융자						
	민간융자						

□ 세부 자금조달 계획

- 자본금 조달방안
 - 조달 예정인 자금규모, 예상조달일 등을 명시
 -
- 차입금 조달방안
 - 대출기관, 대출조건, 상환방식 등을 명시

4.2 융자금 등 집행계획

(※ 집행계획은 융자금 수령 후 집행기한 1년간 융자금과 자부담을 포함)

□ 집행계획

구분	총 집행액	정부 융자금	자부담	
			자체자금	외부차입
금액(백만원)				
비율(%)	100%	70%	30%	

□ 세부 집행내역

(※ 집행시기는 융자신청 시점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 산정, 집행항목 및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)

(단위 : 백만원)

집행시기	집행항목	산정 근거	집행액	비고
계				
20xx년 1분기				
20xx년 2분기				
20xx년 3분기				
20xx년 4분기				

5. 정책목표 달성효과

5.1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적

(※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 민간환경조사, 컨설팅, 해외인턴 등 정책사업 참여실적
있는 경우 작성, 국내법인 기준)

- 추진년도 : 20xx년
- 정책사업명 :
- 지원기관 : 해외농업개발협회, 한국농어촌공사 등
- 주요내용 :
- 조사결과 및 활용실적
-
-

5.2 사업추진 기대효과

- 기술수출, 식량안보 기여, 일자리 창출, 전후방산업 동반진출 등

